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1992.10.14

도시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9. 5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2. 9. 9일 회부

다. 상정 일자

0. 제15회 납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2. 9. 21일) 상정, 충분한 연구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차기 회기까지 심사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

0. 제16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2. 10.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이용웅)

가. 제안 이유

-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에도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을 심의 결정하려고 함.

나. 주요 골자

- 기능 □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사항 및 관계 법령 심의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 자문

○ 구성 ┌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청장(당연직)

위원수 : 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이내

위 원 :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91.12.14일 법률 제4477호로 도시 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2.7.1일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92.7.25일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 준칙이 부산시로부터 시달되어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이며, '92.9.1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차기 회기까지 심사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된 후 금번 본 위원회에 재상정된 것임.
-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부산시의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였으나 금번 조례가 새로이 제정되면 부산시에서 재위임 승인 신청된 폭12mm미만의 도로외 23개 시설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에 즈음하여 상부의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더 가까운 곳에서 수렴하려는 취지로서,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을 적극 수렴하여 제출한 본조례안은 헌법 제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인(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으므로 지극히 타당하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배영일 위원	도시정비과장 이 용 웅	<p>0.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3조 3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 의원이라는 단어가 공무원 보다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임명이 앞에 있으면 어휘상 문제가 되므로,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바꾸면 좋을 것임.</p>	<p>0. 제3조 3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전에 수정토록 하겠음. /</p>
김봉곤 위원	”	<p>0.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2항에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본조례 제12조 운영세칙에 반드시 삽입시켜 주어야 할 것임.</p>	<p>0. 제12조의 운영세칙 규정에 반드시 포함 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본회의시 설명 자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음.</p>
이계일 위원	”	<p>0.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2항에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본 조례 제12조 운영 세칙에 삽입시켜 주어야 할 것임.</p>	<p>0.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세칙을 만들 때 합동으로 만들고자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p>
박남서 위원	”	<p>0. 본 조례 제12조의 운영세칙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도시위원회 위원과 구청 공무원의 합동으로 작성토록 건의함</p>	”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위원회에서 본조례 제3조 3항의 내용중 어휘상 문제가 있는 “임명 또는 위촉”
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자구를 정리키로 집행부측과 합의하여 결정하였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